순천시의회 공고 제2017- 2호

「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2월 7일

순 천 시 의 회 의 장

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개정취지

○ 공소 제기되어 구금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규정 신설하여 의정활동비 지급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려고 함.

2. 주요내용

○ 제7조 (의정활동비 지급제한) - 신설

•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지급제한

3. 입법예고 기간 : 2017. 2. 7. ~ 2017. 2. 13. (5일간)

4. 의견제출

○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7년 2월 13일까지 순천시의회(순천시의회 의장)에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화 061-749-4958, 팩스 061-749-4773)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 · 반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붙임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(의정활동비 지급제한)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〈신 설〉	제7조(의정활동비 지급 제한)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.
제7조(준용) (생략)	제8조(준용) (현행 제7조와 같음)